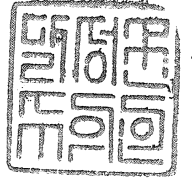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199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10. 6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보고이유

-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,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함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근거법령

- 가.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
- 나.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, 제4조, 제9조

3. 센터운영현황

- 가. 위 치 : 달성군 논공읍 금강로16길 11
- 나. 운영예산 : 515백만 원
- 다. 운영방식 : 민간위탁
- 라. 수탁기관 : (재)달성복지재단
- 마. 인 원 : 8명(센터장, 사무국장, 팀장2, 직원4)
- 라. 주요업무
 - (1) 자원봉사 시책사업 추진(마일리지제 운영 등)
 - (2) 자원봉사활성화 사업
 - (3) 자원봉사한마음대회, 이동종합복지서비스 등

4. 재계약 경위 및 향후일정

가. 2021. 08. : 재계약 요청

나. 2021. 09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(재계약 적정 판단)

－ 심사결과 : 84점으로 재계약 의결(70점 이상시 적격)

다. 2021. 10. : 협약 체결 및 공보 게재

라. 2022. 01. : 위·수탁 개시

－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4. 12. 31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[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]**

-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의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,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그 위탁사무 처리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[정의]**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[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]**

-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[재계약]**

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